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연금추가 기여 인정 필요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는 연령별 구분 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 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은퇴 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5,500달러의 추가 기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50대 미만 근로자보다 2배 더 인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진국은 연령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차등화 하는 추가기여플랜제도를 도입하여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독려하고 있음.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기여를 인정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기여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이와 더불어 미국 및 호주는 은퇴 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 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추가 기여를 허용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50대 이상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넘어 추가 기여를 허용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도 50대 이상의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50대 미만 퇴직연금 기여 한도보다 2배 높게 책정하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EGTRRA(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50대 이상에 대해 추가기여플랜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은퇴자산 축적을 독려함.

- 추가기여플랜제도는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어 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추가 기여액 만큼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게 됨.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기여한도(Limit on Annual Additions),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임금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Limit on Elective Deferrals) 이외에 50세 이상에게 허용되는 추가 기여 한도로 이루어짐.

〈표 1〉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 변화 추이

구분	내용		
	EGTRRA 이전(2001년)	EGTRRA 이후(2002년)	2011년
확정기여형 기여한도 확대 ¹⁾	연봉의 25%와 연 35,000달러 중 작은 금액	연봉의 100%와 연 40,000 달러 중 작은 금액 (이후 단계적 상향)	연봉의 100%와 연 49,000달러 중 작은 금액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한도 확대 ²⁾	10,500달러	2002년 11,000달러 (이후 단계적 상향)	16,500달러
50세이상 근로자 추가기여허용 ³⁾	없음	2002년 1000달러 (이후 단계적 상향)	5,500달러

주: 1) 기업과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한도 상향(Annual Additions, IRC 415조 c항).

2) 근로자가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상향(Elective Deferrals, IRC 402조 g항).

3)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상기 한도에 적용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료: Vanguard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2011), Catch-Up Contributions: Plan Sponsor and Participant Adoption 및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2011), 은퇴와 연금 등에 의해 작성됨.

■ 따라서 50세 이상 미국 근로자는 자발적인 기여한도 16,500달러에 추가 한도인 5,500달러를 더해 총 22,000달러(약 2,500만 원)까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음.

- 결국 사용자 기여금까지 합쳐 총 기여 한도인 49,000달러를 초과해도 무방하므로 연간 총 54,500달러 (약 6천 300만 원)까지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한 구조임.

- 호주는 1992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화되어 사용자들은 연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인계정에 납입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기여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음.

- 이렇게 사용자가 납입해주는 기여금(Super Guarantee)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 달리 해당 금액에 대해 15%로 저율과세를 하는 점이 특징임.

〈표 2〉 호주의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한도

구분	2011년 현재	2012년 이후
50세 이상	50,000 호주 달러	50,000 호주 달러 (영구적으로 유지)
기타 근로자	25,000 호주 달러	25,000 호주 달러 (적립금 50만 호주달러 이상)

주: 적립금이 50만 호주달러 미만인 근로자의 기여한도는 50,000 호주달러임.

- 현재 50세 미만 호주 근로자는 25,000 호주달러, 50세 이상 호주 근로자는 50,000 호주달러까지 기여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연령별에 따라 기여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퇴직연금 세제개편에 의해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만 호주달러 이상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기여 한도는 25,000 호주달러,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50,000 호주달러 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기여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위함임.

- 이러한 미국 및 호주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은퇴 이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금융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기여를 허용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은퇴자산을 형성하는데 가장 유용한 제도인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아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기간마저 불충분한 실정이기 때문임.

- 따라서 50대 이상이 남은 기간 동안 은퇴자산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형 추가기여 플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